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불공정거래 수탁·위탁거래 방지를 위해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4. 1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삭제) 제5조(표준약정서의 고시)

- 해당 조항 내용을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삭제 필요

* 상생협력법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기간(2024. 8. 13. ~ 2024. 9. 23.)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중소벤처기업부령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조(표준약정서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약정서의 교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u>	<u><삭 제></u>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연 락 처	(044) 204 - 7915